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2023. 10.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03
- 나. 제 안 자: 이상원 의원 외 6인
- 다. 제안일자: 2023년 10월 6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화)

2. 제안사유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마포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4. 관계법령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5. 검토보고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10월 6일 이상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외 활동이 줄고 실내 공간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가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으며 심리적 안정감과 공기 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2022년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식물에 대한 인지도가 87.9%로 1년 전보다 5.6% 증가하였음. 또한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는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이 54.8%를 차지함.
- 또한, 반려식물은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 미세먼지 및 전자파 감소 등 국민의 건강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 외에도 다양한 정책 효과가 기대됨.
- 이처럼 새로운 트렌드가 된 반려식물문화를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조문 검토

- 먼저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히, “반려식물”은 현재 상위법령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이를 본 조례안에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에서는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그 밖에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도 마련하였음.
- 그 외에 안 제5조는 구민을 상대로 한 식물, 원예 관련 교재나 홍보물품 제작, 보급, 배포의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마포구도 올해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368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3년까지는 시비 100%로 진행되나, 2024년부터 구비 40%, 시비60%로 진행될 예정임.
- 따라서, 향후 마포구가 반려식물 사업을 확대할 경우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므로, 동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2023. 7월 기준

연 번	지 역 명	소 관 부 서	조 례 명	제 정 시 기
1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2023. 3. 6.
2	전라남도 나주시	농업진흥과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5. 12
3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 담당관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5. 22.
4	충청남도	농촌자원과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24.

붙임 2

마포구 반려식물 보급 사업

<2023년 마포구 반려식물 보급 및 집합 원예프로그램 운영 계획>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농업육성법 조례」 제20조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담당관-3814(2023. 3. 14.)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7. ~ 12.
- 사업대상: 맞춤형봄어르신(취약계층 등 만 65세 이상) 총 368명
- 내 용: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

□ 세부계획

① 반려식물 보급

-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반려식물을 1개씩 보급 및 설문조사 실시
- 보급대상 : 맞춤형봄어르신(취약계층 등 만 65세이상) 총 368명
 - 선정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선정
 - 산출방법 : 16개 동 × 23명 = 총 368명
- 보급수종 : 여인초, 파키라수반, 녹보수, 관음죽 中 1가지 선택

② 반려식물 사후관리(집합교육, 방문교육)

- 사업내용 : 사후관리 차원에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 교육인원 : 집합교육 180명, 방문교육 188명
 - 집합교육 : 6개반(1개반 30명)×6회 수업(감사의 꽃바구니 만들기 등)
 - 방문교육 : 직접 방문하여 반려식물 진단 및 교육
- 교육장소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이용

③ 반려식물 전시회

- 사업내용 : 원예프로그램 활동 결과물(화분, 사진) 등 전시
- 장 소 : 구청 1층 로비(예정)

□ 소요예산: 금38,069,000원(서울시 교부금 100%)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 9. 6.>

[본조신설 1988. 3. 18.]